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 상품요약서

판매일자: 2025.02.01.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은 최저사망적립액과 금액보증연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행복자 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최저사망적립액이란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액 보증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는 관계 없이 연금기준금액에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합니다. 자세한 보증 방법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금액보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연금기준 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연금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A: 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금액보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 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금기 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금액

=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 ------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다만,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A: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 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②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적용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 합니다
 - (가)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7/100(연단리 7%기준)
 - (나)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100(연단리 5%기준) 다만,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가)에 따라 7/100로 적용합니다
 - (다)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21%
- ③ '①'에서 '②'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 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약관 제38조(중도인출) 제7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선지급행복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A: ① 선지급행복자금이라 함은 유효한 계약에 한해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 이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선지급행복자금의 신청비율은 최소 10%에서 30%까지 10%p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선지급행복자금기간 확정연금 지급기간으로 일시금, 5년, 1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은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 A: ①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②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경과월수(선납포함)-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일자: 2025.02.01.

(다)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Q: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A: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1. 1회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도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의 합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중도인출금액은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 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 외된 금액)이 1구좌당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전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3. 제1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제2호에 따라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추가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 차감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보 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 ④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1구좌당 300만원보 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 ⑨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 연금보험, 개인형
- -. 금액보증연금형

2.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0세까지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3.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내 용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최소거치기간	5년
가입나이	만 15세 ~ 70세
	55세 ~ 80세
연금개시나이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보험료 납입주기	월 납

4. 가입한도

구 분	가 입 한 도	가입단위	비고
주 계 약	월납보험료	1만	
구계학	20만원 ~ 15,000만원	T인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즈게야 다취근이 10배	1 □ ŀ	_
(3대질병형)	주계약 보험료의 10배	1만	-

(주) 1.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의 경우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 초과 시 가입 불가, 특약을 부가한 경우 주계약보험료 납입기간 변경 불가

5.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 1구좌 기준,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주계약)

-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선택특약)
- 제도성 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제한 사유

가.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	00만원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금액보증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다만 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 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3.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4.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 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나)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적용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7/100
 - (2)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100 다만,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1)에 따라 7/100로 적용합니다.
 - (다) (가)에서 (나)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

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약관 제38조(중도인출) 제7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후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금액보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금액

판매일자: 2025.02.01.

=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 -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다만,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6.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의 계산은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7 기본 지급률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경우
55~59세	3.43%	3.31%
60~64세	3.78%	3.62%
65~69세	4.25%	4.04%
70~74세	4.78%	4.57%
75~80세	5.36%	5.15%

8.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10~24년	0%
25~39년	30%
40~54년	35%
 55년 이상	40%

- 9.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기본 지급률 x (1 + 장기유지 가산율)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약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금액보증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금액보증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지급주기는 금액보증연금과 동일하게 합니다.
- 12.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일시금 또는 확정 연금으로 지급하여드립니다.
- 13.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보증연금은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만큼 줄어듭니다.
- 14.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금액보증연

금보다 더 클 경우에는 금액보증연금이 아닌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15. 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판매일자: 2025.02.01.

나. 부가특약

(1)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 용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 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거치형)

(가) 즉시형

Ŧ	1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10년 보증지급형		(10년/20년/100세 보증시급) - 정액형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20년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2.11	100세 보증지급형		
종신 연금형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 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 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 액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전환한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 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이 특약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율(연금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거치형

보 장 기 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연금	종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개시후	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계산한 연금액지급

		20년 보증지급형	일에 살아있을 때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100세 보증지급형	글에 글었글 때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보험 기간 중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진	성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 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 €	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액을 차감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 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판매일자: 2025.02.01.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 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이 특약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 율(연금IV)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 1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 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일자: 2025.02.01.

라. 보험금 부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료 산출기초

①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이며,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또한, 각 특약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2.75%입니다.

②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¹⁾와 운용자산이익률⁽²⁾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신공시이율(연금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5.02월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2.00%이며, 「신공시이율(연금IV)⁽³⁾」가 변동될 경우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국고채/회사채/통화안정증권/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 (2)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3)「신공시이율(연금Ⅳ)」는「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신공시이율(연금IV)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연금IV)가 0.4%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0.4%)가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 후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연복리 0.5%)로 적립됩니다.

판매일자: 2025.02.01.

④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	분	20세	40세	60세
80%이상 재해장해	남 자	0.000016	0.000014	0.000074
발생 률	여 자	0.000005	0.000003	0.000021

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더!행복플러스연금보험(보증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 신계약 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 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나이 40세, 남자, 10년납, 월납, 60세 연금개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신공시이율(연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연금IV) 중 낮은 이율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 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	31,796	3.5%	821,546	91.3%	31,796	3.5%
6개월	1,800,000	877,252	48.7%	1,637,752	91.0%	877,252	48.7%
9개월	2,700,000	1,717,180	63.6%	2,448,430	90.7%	1,717,180	63.6%
1년	3,600,000	2,551,389	70.9%	3,253,389	90.4%	2,551,389	70.9%
2년	7,200,000	5,827,226	80.9%	6,412,226	89.1%	5,827,226	80.9%
3년	10,800,000	8,996,175	83.3%	9,464,175	87.6%	8,996,175	83.3%
4년	14,400,000	12,045,655	83.7%	12,396,655	86.1%	12,045,655	83.7%
5년	18,000,000	14,962,833	83.1%	15,196,833	84.4%	14,962,833	83.1%
6년	21,600,000	17,734,620	82.1%	17,851,620	82.6%	17,734,620	82.1%
7년	25,200,000	20,347,664	80.7%	20,347,664	80.7%	20,347,664	80.7%
8년	28,800,000	22,671,346	78.7%	22,671,346	78.7%	22,671,346	78.7%
9년	32,400,000	24,808,777	76.6%	24,808,777	76.6%	24,808,777	76.6%
10년	36,000,000	26,745,787	74.3%	26,745,787	74.3%	26,745,787	74.3%
15년	36,000,000	17,457,120	48.5%	17,457,120	48.5%	17,457,120	48.5%
20년	36,000,000	36,001,000	100.0%	36,001,000	100.0%	36,001,000	100.0%

36,000,000

36,000,000

15년 20년 17,457,120

36,001,000

판매일자: 2025.02.01.

〈기준: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나이 40세, 여자, 10년납, 월납, 60세 연금개시〉 (단위: 원)

14,246,815

36,001,000

39.6%

100.0%

14,246,815

36,001,000

39.6%

100.0%

48.5%

100.0%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신공시이율(약	평균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연금IV) 중 낮은 이율			
		해약환 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	31,826	3.5%	821,576	91.3%	31,826	3.5%
6개월	1,800,000	877,313	48.7%	1,637,813	91.0%	877,313	48.7%
9개월	2,700,000	1,717,271	63.6%	2,448,521	90.7%	1,717,271	63.6%
1년	3,600,000	2,551,511	70.9%	3,253,511	90.4%	2,551,511	70.9%
2년	7,200,000	5,827,471	80.9%	6,412,471	89.1%	5,827,471	80.9%
3년	10,800,000	8,996,546	83.3%	9,464,546	87.6%	8,996,546	83.3%
4년	14,400,000	12,046,155	83.7%	12,397,155	86.1%	12,046,155	83.7%
5년	18,000,000	14,963,464	83.1%	15,197,464	84.4%	14,963,464	83.1%
6년	21,600,000	17,735,385	82.1%	17,852,385	82.6%	17,735,385	82.1%
7년	25,200,000	20,348,565	80.7%	20,348,565	80.7%	20,348,565	80.7%
8년	28,800,000	22,672,387	78.7%	22,672,387	78.7%	22,672,387	78.7%
9년	32,400,000	24,809,960	76.6%	24,809,960	76.6%	24,809,960	76.6%
10년	36,000,000	26,747,115	74.3%	26,747,115	74.3%	26,747,115	74.3%
15년	36,000,000	17,460,228	48.5%	17,460,228	48.5%	17,460,228	48.5%
20년	36,000,000	36,001,000	100.0%	36,001,000	100.0%	36,001,000	100.0%

- (주) 1.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미상각해약공제액 포함), 특약보험료,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상기 환급률은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입니다.
 - 3.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 현재(2025년 02월)의 신공시이율(연금IV)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6. 상기 예시금액은 여러 가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해약환급금 및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납을 한 경우
 -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 7.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 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8.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 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20년까지 연단리 7%기 준, 20년 이후 5%기준,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 이자율로 환산 시 연복리 4.21%)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 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9.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또는 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감소합니다.
- 10. 실제 해약환급금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신공시이율(연금IV) 변동시 해약환급금 도 변동됩니다.
- 11. 신공시이율(연금IV)는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주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 12.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신공시이 율(연금IV)로 적립됩니다.
- 13. 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연금지급개시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15년납, 월납)

판매일자: 2025.02.01.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2.41%	0.46%	0.45%	0.00%	3.32%

- (주) 1.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3.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만원, 10년납, 월납)

경과기간	1~10년	11년~20년
보험관계비용	26,022원~26,022원	4,032원~4,032원
(매월)	(8.7%~8.7%)	(1.3%~1.3%)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계약체결비용	매월	-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5.17%(15,510원)

(주) 위험보험료: 연금개시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약공제 비용

해약공제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71	59	47	36	24	12	0	0
해약공제비율(%)	19.5%	8.2%	4.4%	2.5%	1.3%	0.6%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 해약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패널티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추가보험료의 1.5%
추가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다만, 누적 중도인출금액 이내에는
			Min(추가보험료의 0.5%, 10.000원))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